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인천대학교 교무과, 032-835-9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및 「인천대학교 학칙」 제5조에 의해 설치하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15., 2019. 3. 29., 2024.1.10.>

제2조(학위과정) 계약으로 설치하는 학과(이하 “계약학과”라 한다)에는 학사학위과정(이하 “학사과정”이라 한다),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 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①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 및 학위명은 [별표 1]과 같다.

② 채용조건형 및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정원은 모두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20%이내로 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 주관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입학정원의 50%까지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6. 1. 15., 2019. 3. 29.>

제2장 입학, 편입학

제4조(입학자격) ① 학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나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4.1.10.>

② 석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또는 예정)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4.1.10.>

③ 박사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또는 예정)하였거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4.1.10.>

④ 채용조건형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하며, 재교육형의 경우 산업체 재직기간을 입학일 기준 10개월 이상으로 하고, 학생신분으로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고자할 경우 졸업한 이후부터 입학일 기준 재직기간 10개월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제4항의 10개월 재직기간 요건은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학위 과정의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3. 29., 2024.1.10.>

제5조(학생의 선발) 계약학과는 서류전형, 면접고사 등 전형방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부 편입학 자격) ① 본교 제2학년, 제3학년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직전 학년까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라야 한다.

② 학사학위를 가진 자는 제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③ 신입학과정 계약학과의 경우 입학정원에서 2학년 재학인원을 차감 후, 잔여정원 범위 내에서 3학년 편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2. 27.>

제3장 학기·수업

제7조(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 2개 학기로 한다.

제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수업) ① 수업은 출석수업·현장실습수업·원격수업 그 밖에 교육부령, 대학 및 대학원 학칙에 따라 의하여 본교 또는 계약산업체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9. 3. 29., 2024.1.10.>

② 이동수업의 경우 계약산업체에서 교육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모체학과 소속 교원의 70% 이상 동의를 얻어 본교 계약학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이동수업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신설 2019. 3. 29., 2024.1.10., 2024.1.10.>

1.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¹⁾에 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2.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3.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4.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 ③ 원격수업의 경우 해당 학과 졸업학점의 50%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9., 2024.1.10.>
- ④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체 교육과정의 30% 이상 수업을 담당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9.>

제4장 학부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등과의 계약시 요구나 의뢰받은 내용을 반영하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 ② 그 기준은 총 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상의 수강과목은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 ④ 교과목의 이수구분은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으로 하며 핵심과 심화 구분 없이 이수토록 한다. <신설 2011. 9. 16., 2024.1.10.>
 - ⑤ 교양 이수교과목은 기초교육원에서 지정하는 e-learning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6.>

제11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15.>

제12조(수료학점과 수업연한) ① 각 학년의 수료 인정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5., 2024.1.10.>

수료학년 \ 졸업학점	120학점 이상
1학년	30학점 이상
2학년	60학점 이상
3학년	90학점 이상
4학년	120학점 이상

② 계약학과 수업연한은 본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9. 7. 5.>

제13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영어졸업인증제 면제) 계약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본대학교 학칙 제 66조 영어졸업인증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 2024.1.10.>

제5장 대학원 교육과정·이수·수료·수업연한

- 제15조(교육과정의 편성·이수)** ① 교육과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등과의 계약시 요구나 의뢰받은 내용을 반영하되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다.
- ② 그 기준은 총 학점으로 하고, 교과목 이수단위를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편성된 교육과정상의 수강과목은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이수한다.

제16조(교육과정 이수 인정)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자가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 해당 계약학과 교육과정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6. 1. 15.>

제17조(수료학점) 계약학과 석·박사과정을 수료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석사과정은 24학점으로, 박사과정은 36학점으로 한다.

제6장 계약학과 운영·관리 등

제18조(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계약학과의 설치·운영 기간은 학사과정은 4년(편입은 2년 이상), 석사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6학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시 상호협약에 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9조(계약학과 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은 학사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9. 3. 29., 2023.6.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기획예산처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설치학과(부) 및 대학원 계약학과 책임교수,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으로 한다. 단, 산업체 및 학생위원이 전체 운영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6. 1. 15., 2016. 6. 22., 2019. 3. 29.>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 6. 22.>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계약학과의 설치 및 폐지
3.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
5. 계약학과 교과과정 편성
6. 계약학과 이동수업의 운영 <신설 2024.1.10.>

제20조(발전위원회) 계약학과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체 관계자를 포함한 15인 이내 로 구성된 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무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 11. 27., 개정 2019. 3. 29.>

제21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와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약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9. 3. 29.>

② 계약학과의 개설촉진 및 안정적 학과 운영을 위해 책임교수 및 조교수당, 시간강사료, 학과운영비, 장학금 등의 세출예산을 등록금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 심의 및 총장의 재가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 3. 29.>

제22조(수업료 등 납부) 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는 학생에게 납부금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5.>

②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계약학과의 학생이 부담하는 납부금의 총액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15.>

③ 등록금중 산업체가 납부한 부담금의 경우 매학기별로 법인명의 계좌입금 및 예산 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반드시 확인하며, 대학은 해당 산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9. 3. 29.>

제23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① 계약학과의 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학부에서 잔여기간의 교육을 맡는다.

② 계약학과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 조정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의 납부금액은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4조(학칙적용 대상) 계약학과의 학생은 학칙에서 정한 휴학, 전과, 재입학,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단, 계약학과 학생이 군 복무, 출산 및 산업재해 등으로 인해 수업 일수의 1/3 이상 수업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제정에 의해 총장이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4.7.31.>

제7장 준용규정

제25조(규정적용 우선순위) ①이 규정에서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세부지침의 적용이 우선하고, 그 다음 계약학과가 소속된 대학(원) 학칙과 학칙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 9. 16.>

② 대학연계형 일학습병행제 계약학과 관련사항은 운영지침을 별도로 둔다. <신설 2018. 2. 28.>

부칙 <제00587호, 2011.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10호, 2011. 2. 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655호, 2012. 7.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50호, 2014. 7. 22.>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93호, 2016. 1. 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08호, 2016. 6.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25호, 2017. 3. 31.>

이 규정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38호, 2017. 11.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54호,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892호, 2019. 3.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07호, 2019.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계약학과 재적학생의 기편입학 학점인정은 개정규정상 졸업학점의 1/2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다.

부칙 <제00932호, 2020. 2. 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40호, 2020. 6.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959호, 2021. 2. 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24호, 202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041호, 2023. 5.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4호, 2023.6.7.> (인천대학교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등의 개정) ① ~② 생략

③ 인천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1항 중 “교무과”를 “학사팀”으로 한다.

④~ ⑤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

부칙 <제1070호, 2024.1.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89호, 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은 2024학년도 신·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단, 신입과정을 운영하는 글로벌무역물류학과의 2024·2025학년도 편입생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신설 2011.9.16., 개정 2012.7.24., 2014.7.22., 2016.1.15., 2017.3.31., 2017.11.27., 2018.2.28., 2019.3.29., 2020.2.27., 2020.6.26., 2021.2.23., 2023.1.31., 2023.5.24.>

계약학과 명칭·학생정원·학위명

대학 / 대학원	학과명	입학정원	수여 학위
글로벌정경대학	글로벌무역물류학과	15명(신입학)	물류학사
경영대학	테크노경영학과	20명(편입학)	경영학사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20명(편입학)	공학사
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10명	경제학석사
	녹색환경융합학과	20명	환경융합학공학석사

[별표 2] <신설 2011.9.16., 개정 2012.7.24., 개정 2016.1.15., 2017.3.31., 2018.2.28., 2019.3.29., 2019.7.5., 2021.2.23., 2023.5.24. 2024.1.10.>

계약학과 졸업학점

대학	학과	교양	전공	기타 (일반선택)	졸업학점
글로벌정경대학	글로벌무역물류학과	24학점 이상	6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경영대학	테크노경영학과	18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도시과학대학	도시건설공학과	18학점 이상	51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1) 동일한 권역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전역 또는 본교로부터 직선거리 50km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